

#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161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의 수상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현실과 부합치 않는 수상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수상부문중 장한여인부문의 3개 분야를 2개분야로 하고 장한아내부문을 추가
- 수상자 결정방법에 있어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정

## □ 첨 부

1.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친구조문 대비표 1부

#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장한아내 부문.

제7조제1항중 "각부문별로 심사위원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"를 "각부문별  
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후"로 하고 동조제2항중  
"제3호의"를 "제4호의"로하고 "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"  
를 "2명이내의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: 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   |
|--|--|
| <p>제3조(수상부문) 여성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한어머니 부문</li> <li>2. 장한며느리 부문</li> </ol> <p>(신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장한여인 부문</li> </ol> | <p>제3조(수상부문)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....</li> <li>2. ....</li> <li>3. 장한아내 부문</li> <li>4. (현행3호와 같음)</li> </ol> |
| <p>제7조(수상자결정) ① 수상자는 각부문별로 심사위원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.</p> <p>② 제3조 제3호의 부문에 대하여는 공적이 상이한 분야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.</p>  | <p>제7조(수상자결정) ① .....각부문별로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후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..... 제4호의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2명이내의 .....</p> <p>.....</p> |